

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년 8월 2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8월 2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6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
(2010. 9. 3) 상정 및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)

□ 제안이유

-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「경관법」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경관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공공건축물과 도시시설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·정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을 별표 1의 공공건축물 및 별표 2의 도시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. (안 제20조제3호)
- 나.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도시시설물의 분류와 시설물의 종류를 정비함. (안 별표 2)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문	답 변
<p>○ 디자인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음. 한번 디자인해서 사용 기준연도를 5년, 15년 정하면 오히려 문제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?</p>	<p>○ 표준모델을 정하여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 기준연도를 5년과 15년으로 정하고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심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임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3호 중 “별표 1의 공공건축물 및 별표 2의 도시시설물 중 야간경관개선사업을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관한 심의”를 “별표 1의 공공건축물 및 별표 2의 도시시설물에 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“별지”

[별표 2]

도시시설물(제20조 관련)

1. 도시구조물

분 류	시 설 물 의 종 류	비 고
도로시설물	가. 교량(철교를 포함한다) 나. 고가차도(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) 다. 입체교각, 지하도의 지상부, 광장 라. 폭 25미터 이상인 도로(변)에 설치하는 길이 50미터 이상의 보도	
도로부속 시 설 물	가. 보도육교 나. 폭 25미터 이상인 도로(변)에 설치하는 길이 50미터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다. 폭 25미터 이상인 도로(변)에 설치하는 길이 50미터 이상의 중앙분리대, 횡스 등	

2. 가로시설물

분 류	시 설 물 의 종 류	비 고
도시철도시설	가. 지하철 출입구(캐노피를 포함한다) 나. 지하철 안내표지판 다. 환기구(흡입구·배기구) 라. 지상노출 엘리베이터	